

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26.

제 출 자 : 창 원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,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함.
- 나.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6조2항(의회 동의 및 보고)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

나.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18조(위탁운영)
-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제6조(의회동의및보고)

※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

- 신규위탁: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
- 재 위 탁: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
- 변경위탁: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,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(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)

○ 필요성

- (보육서비스의 연속성 확보) 기존 수탁자와의 재위탁을 통해 영유아에게 익숙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
- (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) 지난 위탁기간 동안 축적된 학부모·지역사회와의 공고한 신뢰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보육 행정의 공백과 혼선을 사전에 예방
- (행정절차의 효율성 도모) 수탁자 변경 시 발생하는 자산 인수인계 등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소모를 방지하여 행정 효율성 도모

다. 사무의 내용 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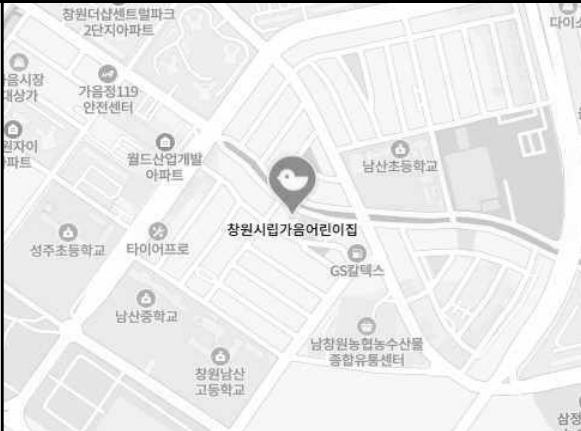
- 국공립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관리, 보육교직원 관리, 영유아 보호 및 교육 등

라. 민간위탁 시설 현황

○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수탁자	정원/현원 (명)	면적 (m ²)	위탁기간	비고
창원시립 가음어린이집	성산구 가양로 56번길 18	허송연	140/125	1,177	2022.1.1.~2026.12.31.(5년)	
창원시립 무동별빛 어린이집	의창구 무동안길 31	전연숙	80/44	615	2022.1.11.~2027.1.10.(5년)	
창원시립 예그린어린이집	의창구 무동서로 76	김명자	52/36	261	2022.3.1.~2027.2.28.(5년)	
창원시립 수피아어린이집	마산회원구 내서읍 옥정1길 9-2	백금희	59/47	256	2022.3.1.~2027.2.28.(5년)	

○ 위치도 및 전경사진

가음		
무동 별빛		
예그린		
수피아		

3. 선정방식 :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
(심사점수 70점 이상 시 기존 수탁자 재위탁)

4. 재위탁 현황

시설명	수탁자	사업비	위탁기간	비고
창원시립 가음어린이집	허송연	664백만원	2027.1.1.~2031.12.31.(5년)	
창원시립 무동별빛 어린이집	전연숙	648백만원	2027.1.11.~2032.1.10.(5년)	
창원시립 예그린어린이집	김명자	403백만원	2027.3.1.~2032.2.29.(5년)	
창원시립 수피아어린이집	백금희	373백만원	2027.3.1.~2032.2.29.(5년)	

5. 적정성 검토 결과

검토기준	검토결과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 운영 가능성	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성과 운영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직영 운영은 인사·노무관리 등 행정부담이 크고 운영의 유연성이 낮으며, 공공기관 위탁은 수행 가능한 기관이 없어 현실성이 부족,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이 행정 효율성,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임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
③ 경제적 효율성	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관리 측면에서 직영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보육교직원 채용,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업무 전반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
⑤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	운영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실적 및 자료관리가 가능하며, 통계자료 활용으로 사업개선 도모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법령·지침 및 위·수탁 협약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
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	민간위탁 시 영유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발굴 용이

⇒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관계법령,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이며,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보육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6. 향후 추진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재위탁 안내 및 현지심사 | : '26. 10. ~ '27. 1. |
| 나.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| : '26. 10. ~ '27. 1. |
| 다. 위·수탁 계약 체결 | : '26. 12. ~ '27. 2. |

붙임 관련법령 각 1부. 끝.

※ 추진 근거법령

영유아보육법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(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. 삭제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제19조의2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.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.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택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 어린이집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정원 및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⑦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
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

제5조(민간위탁 사무의 예시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청소년, 아동,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

제18조(위탁운영)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15., 2021. 5. 14.>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
제20조(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)

① 위탁기간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부령”이라 한다) 별표 8의2에 따라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8., 2025. 8. 8.>

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8. 8.>

③ 삭제 <2021. 5. 14.>

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또는 재위탁 시 부령 별표 8의2 제1호다목 단서의 “조례로 정하는 사유”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8. 8., 2026. 5. 15.>

1.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
2.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휴지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